

주민의견 제출서

계획명	제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	
사업장 위치	제주시 봉개동 일원	
계획수립기관	제주시	
의견제출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·범위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		
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자 (서명 또는 인)

제주시장 귀하

처리절차

